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685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10년	최초 당첨자발표일('26.10.12.)로부터 3년간 적용(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9.18.(금)	2026.11.05.(목)	2026.11.10.(화)	2026.11.13.(금)	2026.11.17.(화)~ 2026.11.18.(수)	2026.11.20.(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5.(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8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5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10.(화)	2026.11.13.(금)	2026.11.17.(화)~2026.11.18.(수)	2026.11.20.(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광명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12.)**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중 잔여 21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82	01	059.7421B	59B	4	202	101
					202	501
					204	402
					205	301
	02	084.9796D	84D	17	206	205
					206	305
					206	405
					206	605
					206	805
					206	905
					206	1005
					206	1105
					206	1205
					206	1305
					206	1405
					206	1505
					206	1605
					206	1805
					206	1905
					206	2105
					206	2205
	합 계			21	-	

■ **공급금액**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라인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0%
							계약 시	1개월 내	2027.04.30.	2027.11.30.	2028.05.31.	2028.11.30.	입주지정일
59B	202동 1호 204동 2호 205동 1호	1층	1	487,791,000	259,209,000	747,000,000	30,000,000	4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373,500,000
		3층	1	526,971,000	280,029,000	807,000,000	30,000,000	5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403,500,000
		4층	1	533,501,000	283,499,000	817,000,000	30,000,000	5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408,500,000
		5층	1	540,031,000	286,969,000	827,000,000	30,000,000	5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413,500,000
84D	206동 5호	2층	1	716,994,000	381,006,000	1,098,000,000	30,000,000	7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549,000,000
		3층	1	739,849,000	393,151,000	1,133,000,000	30,000,000	83,300,000	113,300,000	113,300,000	113,300,000	113,300,000	566,500,000
		4층	1	746,379,000	396,621,000	1,143,000,000	30,000,000	8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114,300,000	571,500,000
		6층	1	752,909,000	400,091,000	1,153,000,000	30,000,000	8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576,500,000
		8층~10층	3	759,439,000	403,561,000	1,163,000,000	30,000,000	86,300,000	116,300,000	116,300,000	116,300,000	116,300,000	581,500,000
		11층~13층	3	765,969,000	407,031,000	1,173,000,000	30,000,000	8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586,500,000
		14층~16층	3	772,499,000	410,501,000	1,183,000,000	30,000,000	8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118,300,000	591,500,000
		18층~19층	2	779,029,000	413,971,000	1,193,000,000	30,000,000	8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596,500,000
		21층~22층	2	782,294,000	415,706,000	1,198,000,000	30,000,000	89,8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599,000,000

■ **공통 유의사항**

- 분양대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중도금 납부일은 공급계약일, 관계 법령 정한 범위에서 건축공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 계약 시 또는 분양 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재 발주 및 시공공정에 따라 추가 신청이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계약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계약자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전용면적 외에 계단·복도·벽체·승강기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경비실·주민공동시설·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해당 공용부분의 비용은 공급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면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면적표에 따릅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납부기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공급계약에 따른 연체료를 산정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기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체일수에 포함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인 단지 내 상가는 별도 분양대상으로, 본 아파트의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5.10.15. 발표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입주 시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잔금대출의 승인 또는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잔금대출이 제한되거나 실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공급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재사항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승인조건에 따라 정정사항을 공고·안내하며, 관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향후 미계약 세대의 분양조건은 판매시점 및 판매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조건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90-7559-31	코리아신탁(주)

- 상기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기재,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예정입니다.(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완납 및 공급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 측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법정 성년후견인 포함) 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 체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90-7580-41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3동 1102호 홍길동: 1031102홍길동)
-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확장금액	대금납부 일정		
		계약금 10% (계약 시)	중도금 10% (2027.04.30.)	잔금 80% (입주지정일)
59B	22,099,000	2,209,900	2,209,900	17,679,200
84D	34,716,000	3,471,600	3,471,600	27,772,800

※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9.1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품목 및 납부일정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6.09.1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3.(금) ~ 2026.11.22.(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3.(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구분	서류접수기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예비 입주자)	2026.11.17.(화) ~ 2026.11.18.(수) (2일간, 10:00 ~ 16:00)	2026.11.20.(금) (1일간, 10:00~16:00)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번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청약 자격 검증 서류 제출

※ 견본주택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2026.11.05.)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본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용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예"로 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차계약서 낙찰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채권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전세 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 일반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주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 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20.(금) 10:00~16:00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정부수입인지(종이 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인지세 관련 세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신청 양식은 계약 장소에 비치
	청약 자격 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11.21.(토)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11.21.(토)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납부 및 공급계약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등 계약체결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접수 마감시간 이후 변경·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착오·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오기재·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청약자격 및 신청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청약자격 부적격으로 판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시티글로벌	㈜시티건설	㈜시티종합건설	㈜시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동 3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4층 409~410호(창곡동, 위례드림시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 4층 401~402호(창곡동, 위례드림시티)
법인번호	110111-4888826	110111-4888834	200111-0042295	284111-0070022

■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번지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				
현장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주요 일정	무순위(사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 체결
	2026.11.05.(목)	2026.11.10.(화)	2026.11.13.(금)	2026.11.17.(화) ~2026.11.18.(수)	2026.11.20.(금)
분양 문의	**1899-6851**				
홈페이지	**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광명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